

경기도민 맞춤형 「스마트 사회서비스」 공모전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ICT,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 등 첨단 복지기술·제품을 결합한 스마트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해 사회서비스 혁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민 맞춤형 「스마트 사회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4.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 경기도민 맞춤형 스마트 사회서비스 공모전

□ 공모기간 : (공모 및 선정) 2024년 9월 ~ 11월
(서비스 실행) 2025년 1월 ~ 2026년 12월

※ 2024년 9월 참여기업 및 참여 시군 선정 이후, 2025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며 서비스 효과성 검증 및 도민의 욕구가 있을 시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실행됨

□ 예산지원방식 : 이용을 희망하는 경기도민에게 바우처 제공방식

※ 참여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님.

※ 예산지원 규모는 매월 "1인당 서비스 단가 × 이용인원 수"

□ 사업목적

- 첨단 복지기술·제품을 활용한 사회서비스를 경기도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이용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수요에 맞는 질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 해소

- 참여한 기업이 보유한 첨단 복지 기술·제품을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기술과 제품의 활성화 및 참여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입을 촉진

□ 사업내용

- 新 복지기술(디지털, ICT, AI, 로봇 등) 및 제품을 활용하여 경기도민을 위한 스마트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기업 선정
(경기도,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경기도 및 시·군 연계를 통하여 서비스 이용자 모집, 서비스 모니터링, 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 참여기업의 스마트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지원
(경기도,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참여기업의 新 복지기술을 활용한 「경기도민 맞춤형 스마트사회서비스」 모델 확정,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효과성 검증, 사회서비스 혁신 방안 마련 등
(참여기업, 경기도,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 공모 계획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9.5.(목) ~ 2024.9.30.(월) 18:00
※ 기간 전 또는 이후에 제출된 건은 무효로 처리할 예정으로 제출기한 엄수
- 접수처 :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신청방법 : 이메일(ggss@gg.pass.or.kr)으로 사업신청서 및 요구서류 등 관련 자료 제출
※ 메일 제목은 "2024년 경기도 스마트 사회서비스 공모 신청-기업명"으로 명시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불가

□ 공모 기술 영역 및 선정 규모

- 공모 기술 영역
 - ① 디지털, ICT, AI, 로봇 등 新 복지기술·제품을 활용하여 경기도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 제품

- ② 2025년부터 경기도민에게 즉각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품 또는 기술이 상용화되어 생산되고 있으며, 안정성이 인증된 기술 · 제품

※ TRL(기술성숙도) 9단계 이상의 상용화된 기술 · 제품

- ③ 지역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전자바우처 전달방식(전자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회당 실시간 결제 원칙,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 서비스) 으로 수행이 가능한 서비스 기술 · 제품

- ④ 서비스 대상 : 아동, 노인, 장애인, 성인, 가족 등 무관

○ 공모 기술 선정 시 제외 기준

- ① 해당 기술· 제품이 서비스와 결합되어 경기도민에게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히 제품만을 보급하는 것은 제외
- ②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기(既) 실행되고 있거나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는 제외
- ③ 사회서비스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유사한 서비스 경우는 중복 서비스 이므로 제외

(예: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등)

○ 선정기업 지원내용

- 선정된 기술· 제품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하여 매월 서비스 이용료가 지원됨 (이용료 지원 규모는 해당 서비스단가 × 이용자 수)
※ 이용료 지원은 이용자에게 바우처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선정된 기술은 2025년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서비스 모델로 시범서비스의 지위로 추진하게됨
- 2년간(2025.01.~2026.12.)의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서비스 모니터링 등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재구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
- 2026년 하반기 신규서비스 효과성 측정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서비스 지속 가능 여부 및 필요성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일반서비스 전환 또는 폐지

□ 신청 자격 및 요건

○ 신청 자격

-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및 제공과정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첨단 기술·제품 +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아래의 ①~③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① 경기도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지점(분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
- ②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으로 등록 가능한 기업
- ③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격을 갖춘 기업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제외 기준 >

※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기관이 사업수행 계획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지원 제외 요건 및 사업별 지원 제외 요건을 별도 지정할 수 있음 [붙임4 참조]

□ 심사 일정

공고 및 접수	1차 서면심사 (적격성 심사)	2차 대면심사 (참여기업 선정)	사업수행 지역 매칭	2025 신규서비스 확정
지원단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경기도 지자체	경기도, 복지부
9/5~9/30	10/1	10/10	10/16	11월

※ 9/12(목) 15:00 공모 신청을 원하는 기업대상 사업설명회 진행(비대면)

- 사업설명회 신청방법 :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www.ggss.or.kr) 공지 사항 911번 게시글에 비밀댓글로 "성명(업체명) / 휴대폰번호"를 등록하면 줌링크를 받을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 기준

○ 1차 서면 심사

- 제출 서류의 적정성, 신청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참여기업의 의무 사항 불이행 여부, 신청 기술분야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현 가능성 등 적격성 심사

○ 2차 대면 심사

-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제안서를 설명한 후 심사 기준에 따른 심사 후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2개 기업 선정 (2순위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선정)

① 기술의 적정성, 사회서비스로서의 우수성, 사업수행능력, 해당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욕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성, 발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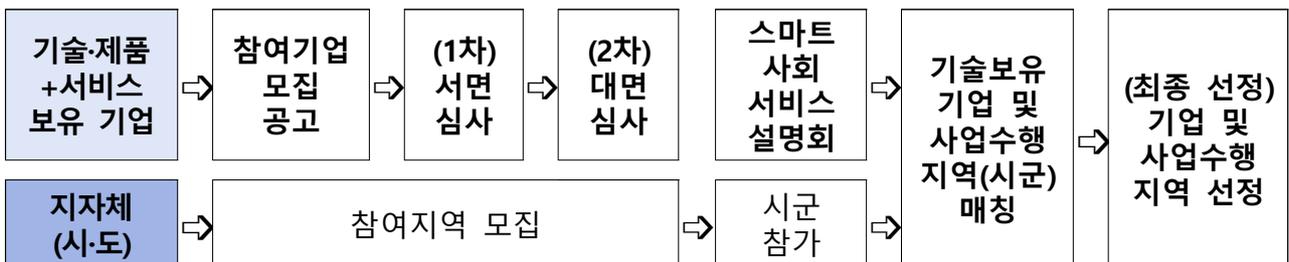
② 발표는 기업 대표 또는 기술 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해당자가 발표할 수 없는 경우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공모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발표자 변경 사유를 포함하여 공문을 제출해야 함

○ 공모 선정 이후의 진행 프로세스

- 2차 선정된 기업이 참여하여 관심 있는 시군에 사업설명회(10월 3주) ⇒ 시군의 참여제안서 접수(10월 3~4주) ⇒ 사업내용과 희망 시군을 명기한 사업계획서를 경기도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1월 1주) ⇒ 경기도 승인 후 보건복지부에 계획서 제출(11월) ⇒ 복지부 승인 후 2025년 신규서비스 실행 준비(12월)

3 기타 사항

□ 추진 절차



□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¹⁾	필수	비고
1	사업신청서	○	붙임 1
2	사업제안서	○	붙임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동의서	○	붙임 3
4	해당 기술의 특허출원서 또는 등록서류	○	-
5	인증서류 ²⁾	○	-
6	기술·제품에 대한 개요자료	○	자유양식
7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불인정,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8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9	최근 3년(21~23년) 회계감사보고서 ³⁾ (감사의견 포함) 또는 표준재무제표(날인본 표지 포함)	○	-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11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 ⁴⁾	○	-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12	기타 성과 증빙서류	해당시	지적재산권 등 보유기술 및 역량 관련 증빙서류 사본

- 1) 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 누락, 잘못된 서류 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 심사 제외
- 2) 제품의 안전 및 상용화를 위해 취득한 인증서류(GMP, KC, KS, 전자파, 의료기기, 통신 등) 제출 필수(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사업계획서 내 인증 취득 예상일자 기재)
- 3) '23년 표준재무제표 확정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회계법인 직인이 날인된 재무제표 또는 2021, 2022년 재무제표 우선 제출하고 추후 표준재무제표 제출 필수
- 4) 서비스 관리 책임자 및 담당 제공인력에 대한 증빙

□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선정·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기업은 사업계획서 제공양식 등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기관은 서비스 수행 과정 중 서비스 효과성 측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요구 시
 -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 요청받는 경우
- 공모신청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지원서 및 제반 서류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관련 문의

담당자	연락처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31-271-9223
	jsh81@gg.pass.or.kr

[경기도민 맞춤형 스마트 사회서비스 사업 신청서]

신청 기관	기관명			대표		
	주소					
	사업자번호			담당부서		
	책임자	직위		연락처	전화	
		성명			이메일	
실무담당자	직위		연락처	전화		
	성명			이메일		

관계 규정과 관련 제반 사항을 준수하면서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스마트 사회서비스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0월 00일

신청기관책임자 (인)

신청기관의 장 (직인)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귀하

구분	첨부 서류	미제출 시 사유
1	사업신청서 <input type="checkbox"/>	
2	사업제안서 <input type="checkbox"/>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4	해당기술의 특허출원서 또는 등록서류 <input type="checkbox"/>	
5	인증서류 <input type="checkbox"/>	
6	기술·제품에 대한 개요자료 <input type="checkbox"/>	
7	사업자등록증명원 <input type="checkbox"/>	
8	법인등기부등본 <input type="checkbox"/>	
9	최근 3년(21~23년)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또는 표준재무제표(날인본 표지 포함) <input type="checkbox"/>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input type="checkbox"/>	
11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 <input type="checkbox"/>	
12	기타 성과 증빙서류 <input type="checkbox"/>	

사업 계획 요약(요약은 2p 내 작성)

사업명		- (예시) 000 기술(제품)을 활용한 00 (대상)를 위한 00 서비스		
기관명				
1. 기관 자격	기관의 적절성	- 장점, 보유 인프라 등 작성		
	기술 또는 제품 개요	- 기술 또는 제품 개요, 우수성, 유사 제품기술과의 차별성, 사업성 등 기재 - 기구축 인프라 보유 현황, 현재 TRL단계 등 포함		
2. 관련 경력	사회서비스 제공경력	- 보유 기술·제품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 (대상기관, 대상인원, 인원 규모, 서비스 내용 등)		
	성과 평가	- 위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의 변화나 욕구 해결 등 목표 달성에 대해 측정도구를 활용해 검증 또는 검사한 서비스 제공 효과 등 기재		
3. 사업 개요	사업 필요성	- 보유 기술·제품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를 제시 - 기업에서 해당 기술·제품을 개발하게 된 동기 또는 사회적 문제 등		
	사업 추진 목표	- 서비스 대상 및 사업(서비스)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제시 * 사업목표 : 이용자(서비스 대상)의 삶의 변화 또는 기능개선 목표 등을 제시		
4. 서비스 세부 내용	서비스 이용대상	- 서비스 대상 (발달장애인, 1인 가구, 고령노인, 가족돌봄청년 등)		
	서비스 제공 방안 및 추진계획	<p>○ 사회서비스와 결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예시)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 기간 (3개월, 6개월, 1년 등 총 제공 기간을 의미) - 회당 서비스 제공 시간, 주당(또는 월당) 제공 횟수 - 서비스 주요 내용 (보유기술, 제품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세부 내용) <p>(예)* 인지훈련콘텐츠 활용한 시지각훈련 0회, 사고력훈련 0회, 기억력훈련 0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연동 웨어러블 활용한 수면모니터링, 일상활동추적, 건강운동관리 - 제공인력 (기업의 서비스 담당 직원)의 역할 - 이용자가 위 기술·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 회당 서비스 단가 (또는 월 단가) - 서비스 제공 장소 (가정 또는 기관) <p>* 해당 기술·제품이 어떤 형태로 서비스와 결합되어 제공되는 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제품을 구매해서 보급하는 것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p>		
	서비스 단가 책정 근거	- 서비스 단가 산출 근거, 유사 서비스 가격 비교 등		
5. 성과 관리	성과지표	측정 도구	측정 방법	측정 시기
	1. 달성하려는 이용자의 변화 목표	- 관련 척도, 만족도 설문 등		
	2.			
6. 환류 기타	사후 관리 및 계획	- 이용자 인터뷰,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결과 등의 서비스 환류 방안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의사		-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 세부 추진계획

I. 기관 개요 및 신청 자격

1. 기관 개요

- 기업의 설립 목적 및 연혁
 - 정관에서 정한 기관 설립 목적, 기관 주요 연혁 기재
- 기업의 설립 형태
 - 기관의 법인격 종류 (공고문에서 4p에서 제시한 법인격 중 해당사항 기재)
 - ※ 자격 증명을 위한 정관,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등 별첨
- 주요 사업 및 활동 내역
 - '24년도 기관 주요 사업 포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 수행 실적

지원기관	사업명	지원금액	기간	세부내용

2.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절성

- 보유 기술 또는 제품 소개
 -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제품에 대한 개요, 우수성, 사업성, 유사 기술 및 제품과의 차별성 등 시범사업 관련 내용 기재
 - TRL 9단계 이상의 상용화된 기술·제품만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 기재
- 해당 기업의 사업 수행 능력
 - 해당 기관이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참여의 적절성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 보유 인프라(생산시설, 산업재산권 등) 기술
 - ※ 특허, 인증, 내부 기술 인력, 구축 인프라, 수상 실적 등 자유롭게 기술 (증빙자료 첨부)

3. 조직 역량

- 동 업무를 전담할 내부 조직 및 인력 구성안
 - 인원 수, 상근/비상근 여부, 책임자 및 업무 담당자 전문성(전공, 학력, 자격, 관련 업무 수행 경험과 경력 등), 업무 분장 등 가급적 상세히 기술
 - ※ 사업책임자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 도표를 활용하여 요약 기술

※ 현재 및 향후 계획 포함

(예시)

○ 사업책임자 등 현황 (대표 및 경영진 전문성)

직위	성명	해당 업무 관련 전문성	비고
대표		- 전공, 자격, 관련 업무 수행경력, 수상실적 등을 자유롭게 기술	
이사			

○ 관리책임자 인력 현황 (해당 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 경력 등)

직위	성명	역할	업무관련 전문성		해당업무경력		
			학력(전공)	보유자격	기관	직위	기간
							yy.mm~ yy.mm
							yy.mm~ yy.mm

- 위 표를 편집하여 사용 가능 (학력, 전공, 보유자격, 관련 업무 수행경력을 기재)

○ 사업담당 인력현황 (해당 인력의 전문성, 전담인력 현황 등)

직위	성명	전담 여부	업무관련 전문성		해당업무경력		
			학력(전공)	보유자격	기관	직위	기간
							yy.mm~ yy.mm
							yy.mm~ yy.mm

- 위 표를 편집하여 사용 가능

(학력, 전공, 보유자격, 관련 업무 수행경력을 기재, 전담 여부 O, X로 표시)

4. 기관 재정건전성 및 회계관리 투명성

○ 재정 건전성 및 독립성 여부

▶ 재정건전성 : (보유자금-보유부채)/기관 총 비용

▶ 재정독립성 : (기관 총수입- 국고보조금)/기관 총 수입

- 사업을 원활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독립성 확보 여부

※ 회계 관련 규정, 회계담당인력 현황,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 회계감사 결과 및 후속조치 내역 등 요약 기술 및 증빙자료 첨부

II. 기관의 사회서비스 제공 경력 및 성과

1. 기관의 사회서비스 제공 경력 (해당 시)

○ 사회서비스 제공 경력

- 기관의 보유 기술·제품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으면 기재

- ▶ 서비스를 제공한 대상 기관
- ▶ 서비스 이용 대상자 (예) 발달장애인, 독거노인, 1인 가구 등
- ▶ 서비스 이용 인원 수
- ▶ 서비스 제공 내용
- ▶ 기타

- 서비스 비용, 예산확보 방법 (이용자부담, 정부지원 등), 대상 기관과의 협력 방법 등등 자유롭게 기재)

2. 사회서비스 제공 경험에 대한 성과 평가 (해당 시)

○ 사회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검증 또는 성과 평가 결과

-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은 이용자의 변화나 욕구 충족도, 목표 달성도 등을 전문척도검사, 이용자 만족도설문, 이용자 및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하여 모니터링하거나 검증한 성과가 있을 시 자유롭게 기재

- 아래의 항목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기재

- ▶ 검사 및 측정 도구
- ▶ 검사 및 측정 인원 및 인원 수
- ▶ 검사 및 측정 시기
- ▶ 검사 및 측정의 유의미한 결과
- ▶ 기타

II. 세부 추진방안

1. 사업의 추진배경 (필요성) 및 목표

○ 사업의 추진 배경 (필요성)

- 보유 기술·제품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를 제시
- 기업에서 해당 기술·제품을 개발하게 된 동기 또는 사회적 문제 등 기재
(예시) 고령사회 진입으로 치매 노인인구의 증가, 인지강화훈련을 통한 치매 예방 필요성 등등

○ 사업의 목표

- 보유 기술·제품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제시
예) 이용자의 삶의 변화, 이용자의 기능 개선, 이용자의 욕구 해결 등

○ 목표의 실현 가능성

- 보유 기술- 보유 기술·제품이 위 사회문제 해결과 사업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기재

2. 서비스 제공 방안 및 사업 추진계획

○ 서비스 제공 대상자

(예) 발달장애인, 독거노인, 1인 가구 등

○ 서비스 제공 기간

- 이용자 1인에게 제공가능한 최적의 제공 기간을 개월 수로 명시
(예)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 회당 서비스 제공 시간

- 이용자 1인이 1회 서비스를 이용 시 가장 적절한 이용 시간 기재
(예) 50분, 60분, 120분

○ 주당(또는 월당) 서비스 제공 횟수

- 이용자 1인이 1주 또는 1개월당 이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횟수를 기재

○ 서비스 주요 내용

-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을 활용하여 서비스로 제공할 시, 제공가능한 서비스 내용과 콘텐츠를 자세하게 기재

- (예 1) 인지훈련콘텐츠인 경우, 시지각훈련프로그램 0회,0시간/ 사고력 훈련 0회, 0시간, 기억력훈련 0회, 0시간을 제공가능한 콘텐츠 보유
- (예 2) 빅데이터 연동 웨어러블 기계를 활용하여 수면모니터링 후 수면 진단, 일상활동 추적 결과를 활용한 운동 처방 제공 등

○ 이용자가 해당 기술·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 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 기재

○ 기관(기업)의 담당 제공인력의 역할

- 담당인력의 필요 자격 및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이용자 초기 상담, 이용 안내, 서비스 제공 현황 정기모니터링 월 0회
이용자 기능 개선도 측정 0회, 사후 효과성 측정 0월, 사후관리 0회 등

○ 회당 서비스 단가 (또는 월 단위 서비스 단가)

- 해당 기술· 제품을 사회서비스로 제공 시 지불해야할 회당 서비스 단가
- 지역사회서비스는 회당 서비스 단가 책정방식이 원칙, 단, 회당 가격을 책정하기 어려운 기술· 제품인 경우 월 단위 단가를 제시 가능

○ 서비스 단가 책정 근거

- 서비스 단가 산출 근거, 유사 서비스 가격 비교 등

○ 서비스 제공 장소

- 이용자의 가정, 해당 기업 보유한 공간, 또는 제3의 장소 대여 등 구체적 기재
- 지역사회서비스는 재가방문형과 기관방문형의 2가지 유형으로 제공되고 있음.
기관방문형의 경우 해당기관의 보유공간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짐. 필요 시 제3의 장소 대여도 고려 가능함.

※ 해당 기술· 제품이 어떤 형태로 서비스와 결합되어 제공되는 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품을 구매해서 보급하는 것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3. 안전성 확보방안

○ 이용자 안전성 확보 방안

- 기술 적용 시 주의사항, 모니터링, 안전 교육, 기술에 대한 안전성 입증,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개인정보보호조치 등 안전확보계획 제시

III. 성과관리 및 사업화 계획

1.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

○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측정 도구	측정 방법	측정시기
1. 달성하려는 이용자의 변화 목표	- 관련 척도, 만족도 설문 등		
2.			

- 사업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 지표와 측정도구, 측정방법, 측정시기 등을 제시
-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는 구체적으로 계량화된 수치로 제시함

○ 사업의 기대 효과

- 사업추진으로 인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간접 효과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이용자 인터뷰,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등 방안

○ 평가 결과를 서비스 제공에 환류할 계획

- 위 성과 측정 및 이용자 모니터링 등의 결과를 차후 서비스 운영 및 개선에 환류할 수 있는 체계와 방안 제시

3. 사업화 계획

○ 사업모델 경쟁력 강화 계획

- 보유 기술·제품을 활용한 사회서비스의 차별성, 확장성 강화 및 홍보계획 등
- 기타 사업 활성화 계획 등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경기도민 맞춤형 스마트 사회서비스 공모사업」 참여기관 모집 신청을 위한 정보 수집

수집·이용할 항목

구 분	개인정보 항목
신청기관	총괄 책임자의 성명, 부서, 직위, 휴대폰번호, 내선전화, 이메일, 학력 등
	사업참여 인력의 성명, 부서, 직위 등

수집방법: 전자우편(메일)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보유 및 이용기간: 12개월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평가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여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개인정보 수집 동의(참여 인력 모두 작성)

소 속	성 명	직 위	동의여부		서 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 9. 00.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귀중

붙임4

지원 제외 대상

구분	내용
기관 자격	- 신청기관 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서비스 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접수 서류	- 사업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참여제한	- 경기도에서 기 추진중인 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유사서비스 개발 및 시행이 불가함으로 서비스 제공 목표 및 내용의 중복성 소지가 있는 서비스
신용 및 기업 상태	- 기업의 부도(희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개인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체납)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제,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체납·채무불이행 관련 지원 제외 적용 예외 대상(접수 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 ① 체납·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 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희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p> </div>
	-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인 경우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부채비율·자본잠식 지원 제외 적용 예외 대상(접수 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 ①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②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주채권은행에 문의)
기타	- 기타 본사업 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